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 . . (제 회)	

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
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
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전의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,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(법률 제21446호, 2026. 3. 5. 공포, 7. 1. 시행)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방본부장으로 두는 소방정감 1명을 증원하고,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각각 두었던 소방본부장(소방감 2명)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소방부본부장(소방감 2명)으로 하며, 광주광역시에 두었던 지방소방학교장(소방정 1명)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지방소방학교장(소방정 1명)으로 하는 한편,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소방청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5. 29. ~ 6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”를 “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”를 “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“소방본부장”을 각각 “소방본부장, 소방부분부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소방본부장”을 “소방본부장, 소방부분부장”으로 한다.

별표 1 중 소방공무원 계 “66,799”를 “66,800”으로 하고, 소방정감 “3”을 “4”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시·도 소방본부장, 소방부분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정원표(제2조제4항 관련)

1. 소방본부장

시·도 별 계급별	합계	서울 특별시	전남 광주 통합 특별 시	부산 광역시	대구 광역시	인천 광역시	대전 광역시	울산 광역시	세종 특별 자치 시	경기 도	강원 특별 자치 도	충청 북도	충청 남도	전북 특별 자치 도	경상 북도	경상 남도	제주 특별 자치 도
총계	17	1	1	1	1	1	1	1	1	2	1	1	1	1	1	1	1
소방정감	4	1	1	1						1							
소방감	10				1	1	1	1			1	1	1	1	1	1	
소방준감	3								1	1							1

2. 소방부분부장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방감 2명을 둔다.

3. 지방소방학교장

시·도 별 계급별	합계	서울 특별시	전남 광주 통합 특별 시	부산 광역시	대구 광역시	인천 광역시	대전 광역시	울산 광역시	세종 특별 자치 시	경기 도	강원 특별 자치 도	충청 북도	충청 남도	전북 특별 자치 도	경상 북도	경상 남도	제주 특별 자치 도
총계	8	1	1	1		1				1	1		1		1		
소방준감	2	1								1							
소방정	6		1	1		1					1		1		1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소방기본법」 제3조의2, 제3조의3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</u>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특별시·통합</u> 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</u> <u>도</u>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원) ① 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</u>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4조제2항제5호, 제4조의2제2항제3호, 제8조의2제1항,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.	제2조(정원) ① <u>특별시·통합특별</u> <u>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</u>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④ 시·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중 <u>소방본부장</u>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시·도별 및 계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.	④ ----- ----- <u>소방본부장, 소방부분부</u> <u>장</u> ----- -----.
⑤ 시·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시·도별 정원	⑤ ----- -----

(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은 제외하며, 이하 “시·도별정원”이라 한다)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배치기준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따른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⑥ (생략)

⑦ 「소방기본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두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3조(정원의 조정 요구 등) ① (생략)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 변동이 필요

----- 소방본부장, 소방
부분부장 -----

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----- 특별시
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·
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
치도지사-----

-----.

제3조(정원의 조정 요구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소방본부장, 소방부분
부장 -----

한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제·	-----
개정하거나 소방기관을 설치하	-----
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	-----
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.	-----.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시 · 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표(제2조제2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소방공무원 계	<u>66,799</u>	<u>66,800</u>	+1
소방정감	<u>3</u>	<u>4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85